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7
----------	-----

2021. 10. 22.(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1일
- 나.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10월 1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균형발전 촉진지역(저발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9호, 안 제25조, 안 제30조)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6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가. 제출배경

- 대도시권에 일자리와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지역발전의 불균형 및 인구 소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산업기반 마련 및 주민 소득 제고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성장촉진 지역*에 대하여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 이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성장촉진지역(5)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저발전지역(7) :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현행 조례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 도비 보조금 분담비율 10% 우대 지원 : 40%(그 외 지역 30%, 제천 40%)
- 오페수 처리비용 3년간 최대 3억원 지원
- 물류비용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 시 사업비 일부 지원
- 투자진흥기금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산단을 매입하여 투자기업에게 임대 지원 사업 추진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제9호는 “균형발전 촉진지역”에 대하여 정의함
 - 도내 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지원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범위를 넓히되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저발전지역”이란 용어를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순화하여 당해 조례에 정함
- 안 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안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지역을 “성장촉진 지역(5개)”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7개)”으로 확대함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2021년 → 2026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함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1.8.24)

[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저발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업유치 불리한 지역의 기업 지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바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2026.12.31.)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를 ““균형발전 촉진지역“이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촉진지역”을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성장촉진지역”을 각각 “균형발전 촉
진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9. “<u>성장촉진지역</u>”이란 「<u>국가균형발전 특별법</u>」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10. ~ 15. (생 략)</p> <p>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 ~ ③ (생 략)</p> <p>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 <u>성장촉진지역</u>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도지사가 <u>성장촉진지역</u>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균형발전 촉진지역</u>”이란 「<u>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u>」 제2조제3호----- -----.</p> <p>10. ~ 15. (현행과 같음)</p> <p>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2026년 12월 31일</u> ----- ----- -----.</p> <p>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 ----- ----</p>

현행	개정안
<p>② 1. ~ 2.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u>성장촉진지역</u>에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② 1. ~ 2. (현행과 같음)</p> <p>③ ----- <u>균형발전 촉진지역</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외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시행 2019. 9. 16.]>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합계	70개 시군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개정 2011. 4. 1>,<개정 2018. 11. 9.>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 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저발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저발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저발전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0. 4. 1>,<개정 2018. 11.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의 지역구분 변경에 따른 수혜지역 확대(제천, 증평 추가)
 - 성장촉진지역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균형발전 촉진지역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3. 관련조문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5조 (공장운영비 등 지원)
- 안 제30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공장운영비(오폐수 처리비용, 물류비용),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지역으로 제천, 증평 추가에 따른 비용 추계

나. 추계의 전제

- 국내·외 기업의 요구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개최

다. 추계결과 : '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000,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기존 재원 분담비율

구 분	지 역	분담비율(도:시군)
수도권 인접지역	청주, 충주, 진천, 음성	30 : 70
일반지역	증평	
	제천	40 : 60
성장촉진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변경 재원 분담비율

구 분	지 역	분담비율(도:시군)
그 외 지역	청주, 충주, 진천, 음성	30 : 70
균형발전 촉진지역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40 : 60

○ 보조금 지원은 도-시군-기업 3자간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

- 조례 개정으로 도비 40% 지원 지역에 증평만 추가
- 증평은 분양가능 산업단지가 없으며 초중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2023년 준공 계획으로 보조금 수요는 2023년 이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도)	2차년도 (2023년도)	3차년도 (2024년도)	4차년도 (2025년도)	5차년도 (2026년도)	계
세 출	-	-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	-	500,000	500,000	500,000	1,500,000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	-	500,000	500,000	500,000	1,500,000